



국토교통부

# 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)

---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18225(2020.10.8.)호와 관련 문서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연장신고서가 접수된 경우,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

3. 답변내용

-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?용도?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?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한 것이 되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, 위반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.
- 이와 관련,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, 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,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 계고를 하며,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요건 준수가 요구됩니다.
- 질의와 같이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 또는 시정명령 기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,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안내 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,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시 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면,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---

시설사무관 **하애은**      건축정책과장      전결 2020. 11. 5.  
**김성호**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이형주**

시행 건축정책과-9340      (2020. 11. 5.)      접수 건축디자인과-20453      (2020. 11. 5.)

우 30103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    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38      팩스번호 044-201-5574      / [hanha1224@molit.go.kr](mailto:hanha1224@molit.go.kr)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